

종돈관리요령

- 정부는 지난 3월 11일 「종돈관리요령」을 고시하고 4월 1일부터 이를 시행키로 했 ○
- 다 ○
- 정부가 고시한 「종돈관리요령」에 따르면, 앞으로 300두 이상의 종돈을 등록한 업체는 ○
- 의무적으로 순수계통을 조성해야 하며, 양돈업 등록업체와 허가업체로서 종돈업을 등 ○
- 록한 종돈장은 연간 종돈 1두당 3두 이상의 돼지를 종돈 번식용 돼지로 판매하도록 ○
- 하고 있다 ○
- 또 종돈업자는 연간 생산하는 순종 수퇘지의 5% 이상을 능력검정을 받도록 규정하 ○
- 고 있고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감축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
- 다음은 이번 정부가 고시한 「종돈관리요령」 전문이다. <편집자 주> ○

(농림수산부고시 제 87-12호, 1987. 3)

제 1 조(목적) 이 요령은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종돈업을 영위하는 자가 종돈을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돼지의 개량을 촉진하고 우량한 돼지의 생산보급을 확대하여 농가소득증대와 양질의 돼지고기를 생산공급함으로써 양돈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종돈의 요건) ① 종돈업자가 사육하는 번식용 돼지는 한국종축개량협회가 고시한 돼지등록 규정에 따라 혈통이 등록된 돼지로서 축산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검정을 받은 돼지(이하 “종돈”이라 한다)이어야 한다.

제 1 항의 일반검정의 대상은 체중 90kg 이상의 것으로 한다.

제 3 조(종돈의 구분사육) 법 제1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아 양돈업을 겸하여 영위하는 종돈업자는 제2조의 종돈을 법시행령 제2조 제3호의 모돈과 별도의 돈사에 구분 사육하여야 한다.

제 4 조(종돈의 일반검정) ① 종돈업자는 사육

하고 있는 종돈에 대해 축산법 시행규칙 제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일반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종돈의 일반검정은 농림수산부장관이고 시한 검정기관이 한다.

③ 제2항의 일반검정기관은 종돈의 일반검정을 마친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당해 종돈장을 등록한 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한국종축개량협회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결과를 종돈업등록대장에 기록유지하되 그 두수가 등록두수 이상을 초과할 때에는 종돈수급상황을 감안하여 1월의 기한내에 변경등록을 하거나 등록두수 이내로 감축케 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등록시 두수를 증가시킬 경우에는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종돈업 등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 5 조(종돈의 능력검정) ① 종돈업자는 사육

(별지 1)

발급번호 :		종 돈 일 반 검 정 성 적 서									
신체인(종돈장)	성 명						주민 등록번호				
	주 소										
	농장명						전 화 번 호				
	소재지										
품종 두수	종 돈 두 수			품 종 별							
	암	수	계	Y	L	H	D			계	
신 청 두 수											
활 용 가 능											
활 용 불 가											
종돈업 관리요령 제 4 조의 규정에 따라 종돈검정결과를 위와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정기관장 ⑧											
첨 부 : 종돈개체별 검정내역											

종돈개체별검정내역

농장명 :

위와 같이 종돈을 검정하였습니다.

卷之二

검정인 :

직위 : 성명 @

하는 종돈의 돈균평가를 위하여 보유종돈이 연간 생산하는 순종수퇴지 5% 이상에 대하여 축산법 시행규칙 제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능력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능력검정은 농림수산부장관이 고시한 검정기관(이하 “돼지능력검정기관”이라 한다) 또는 대한양돈협회가 능력검정에 적합한 시설과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자가검정 종돈장에서 한다. 다만, 자가능력 검정을 실시한 경우에는 자가검정공여자돈과 같은 시기에 생산된 순종자돈의 1% 이상을 돼지능력검정기관에 출품하여 검정소 검정을 받아야 한다.

③ 제 1 항의 능력검정방법은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대한양돈협회는 제1항과 제2항의 능력검정결과를 종합하여 연2회 정기적으로 공

표하고 양돈농가의 종돈구입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

제 6 조(번식용 돼지의 판매의무) ① 양돈업을 등록하였거나 허가를 받은 종돈업자는 등록 종돈 1두당 연간 생산되는 돼지중 3두이상 을 종돈번식용 돼지로 판매하여야 한다

② 종돈업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종돈사
육 및 종돈판매대장을 비치 기록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의 종돈판매증명서를 발급
하고 그 부분을 종합하여 매년 2월과 8월에
관할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두수가 판매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되지
아니한 두수에 상응하는 종돈을 감축케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돈의 감축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20조의 2의 정기실태조사

(별지 2)

총 돈 사 육 및 판 매 대 장									
○ 종돈사육 및 판매내역		종용돈	번식 순 종	모 돈 교집종	육 성 돈		비 육돈	자 돈	계
구 분	분				암	수			
현 두 수	종 돈 사								
	번 식 사								
	분 만 사								
	비 육 사								
	자 돈 사								
증 가 자 소	계								
	생 산 구 계	분 만 두 수							
	판 매 폐 기 소	산 자 수							
	계	입							
○ 종돈구입자 내역									
주 소	성 명	종돈장명	판매규격	판 매 두 수		생 산 증명서 발급 번호			
				계	암	수			

월을 기준하여 매 6개월간의 실적을 조사하고 감축대상이 되는 종돈은 차기 정기실태조사전에 감축한다.

제 7 조(종돈의 순수계통조성) ① 등록종돈두수가 300두 이상인 종돈업자는 경제적으로 유용한 돼지의 유전적형질고정 및 이의 조합에 의한 돼지의 생산능력향상을 위하여 종돈의 순수계통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의 계통조성은 매 300두당 1계통 이상으로 하되 그 형질은 서로 다르게 하여야 한다.

③ 제 2 항에 의한 종돈의 순수계통조성방법은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설치하는 가축개량협의회에서 협의하고 이를 농림수산부장관이 확정 시행한다.

④ 제 2 항의 순수계통조성이 제 3 항의 조성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는

매년 11월에 가축개량협의회가 심의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농림수산부장관은 제 4 항의 보고 결과 그 추진실적이 부진한때에는 당해업체가 순수계통조성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다음 해 6월까지 상응종돈두수를 감축토록 조치한다.

제 8 조(위생관리) ① 종돈업자는 보유종돈에 대하여 위생카드를 비치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2 조 제 3 항에 정한 가축전염병증 돼지콜레라, 돼지단독, 돼지일본뇌염, 전염성위장염과 기타 도지사가 지정하는 병에 대하여 예방접종 및 병력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특정질병부재돈(SPF) 생산에 대하여는 별도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9 조(종돈업체 정기점검) 도지사는 매년 2월

(별지 3)

총 돈 생 산 증 명 서

귀하

생 산 농 장 명	
품 종 명	
등록 번 호	부 모
생 년 월 일	
이 유 월 일	
판 매 월 일	
구 입 자	주 소 성 명

위와 같이 종돈생산을 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 증 인 주 소 :

종 돈 장 명 :

성 명 :

◎

(별지 4)

종돈업 등록업체 정기점검표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경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종돈장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인가(부락)	인접양돈장	인접돈사	타돈사와구분설치			
돈사	위치	km	km	m	여부			
	총돈사		일반돈사		계			
	변식돈수		동	m ²	동	m ²	동	m ²
	육성돈수							
	자돈사							
	기타돈사							
	창고							
	기타							
	계							
	위시 생설	소독시설				영업등록증	폐수처리시설	
농장		설치	돈사	설치	유무	용적(능력)		
출입구		사용	출입구	사용	처리방법			
종돈	품종별							
	암수	암수	암수	암수	암수	암수	암수	계
	현통등록돈							
	그중활용돈							
일반점정돈								
이행사항	등록증개시		열통등록증보관		종돈일반점정서		예방접종사항기록	
	유무	유무	유무	유무	유무	유무		
종돈판매	'사육·판매대장'		종돈생산증명발급		6개월간판매			
	유무	유무	판매:	두				
조사(점검)	19년월일		직급:		(①)			

과 8월에 실시하는 종돈업체 정기점검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5조 및 축산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벌칙적용) 도지사는 종돈업자가 이 요령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관계규정 위반에 따른 벌칙을 적용한다.

부 칙

이 요령은 198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탄생 鳳鳴畜機

축산 20년 관리경험과
전문 기계제작 기술이 함께
축산 자동화를 실현했습니다.

축산관리 기술

축산자동화 기계

기계제작 기술

천안시 봉명동 28-3
(0417) 62-6287

온양시 모종동 588-19
(0418) 2-4170